



# WTO시대의 산업피해 구제제도(상)



정진대 과장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 2과장)

## 1. 머리말

우리나라는 60년대 초 산업화를 추진한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와같은 성장은 무역자유화의 세계적 분위기에 적절히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80년대 중반이후 선진국의 공정무역 및 시장경제의 확대요구에 대응하여 자유시장 경제 질서확립 및 개방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수입자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와같은 개방화 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87년 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발전 및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89년 GATT 제18조 B의 BOP조항(개도국의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잠정적인 수입규제 허용) 졸업에 따라 '90년 1월 1일부터 GATT 제11조(선진국 대우)으로 지위가 격상되어 종전의 사전적 수입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GATT규범에 일치되는 사후적 산업피해구제제도에 의해서만 국내 산업을 구제할 수 있게 되어 무역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의 산업 및 무역환경을 보전데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반덤핑제도 등 산업피

해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우리 수출의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미국, EU 등 주요국가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제소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1995년부터 발효된 WTO체제하에서는 산업피해를 유발하는 수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채택된 유일한 보호수단인 반덤핑, 긴급 수입제한(Safeguards) 등 산업피해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기업이 개방화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WTO시대를 맞이하여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능동적 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수입으로 인한 외국의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산업구제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 2. 무역위원회의 기능

우리나라 무역위원회(Korean Trade Commission)는 '87년 7월 1일 대외무역법 제37조에 의거 상공부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하였으며, '90년과 '93년 두차례에 걸쳐 조직확대 및 기능을 보강하여 현재는 통상산업부장관 소속의 준독립적·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하고 판정하는 한편,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을 경우 수입물량제한 관세를 조정 등의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둘째, 덤핑물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조사 및 판정한다.

'95. 3월 현재까지 세이프가드 25건(조사진행중 1건포함), 반덤핑 13건(조사진행중 1건포함)을 조사·판정하여 구제 조치체 함으로써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을 구제하여 왔다. 그밖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와 특정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수입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있거나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상담 및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무역위원회내 산업피해구제상담실(과천 정부제2청사내 4동 118호실)을 설치하여 국내외 산업피해구제제도 설명 및 절차 안내를 해주고 있으며, 자료실도 겸하고 있어 자료열람 및 대출도 가능한데 상담시간은 월요일과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전화 : 02-504-5617)

### 3. 산업피해 구제관련 제도

#### 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Safeguards)

##### 가. 개요

긴급 수입제한제도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의 증가, 외국인에 의한 무역 및 유통 서비스의 공급 증가 또는 국내에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을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 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출국의 정상적인 수출행위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라는 점에서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등의 피해구제 조치에 비해 그 발동요건이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

무역위원회는 수입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이 되면 무역위원회 소속공무원과 당해산업과 관계있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산업·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방법으로는 당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등에 대해 질문서, 면접, 현지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조사하게 되며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 과거 3년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120일 연장가능) 이내에 피해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며, 긍정판정이 날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수량 및 품질 등에 관한 제한, 관세를 조정, 지적재산권의 경우 특정 물품 또는 특정 무역업자에 대한 수입의 중지·금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를 건의하게 된다. 구제조치의 건의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장은 건의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제통상관계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조사기간중이라도 긴급히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잠정적으로 구제조치를 하여줄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때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잠정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고 건의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의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농림수산업 15일)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구제조

치를 하게 되는데 구제조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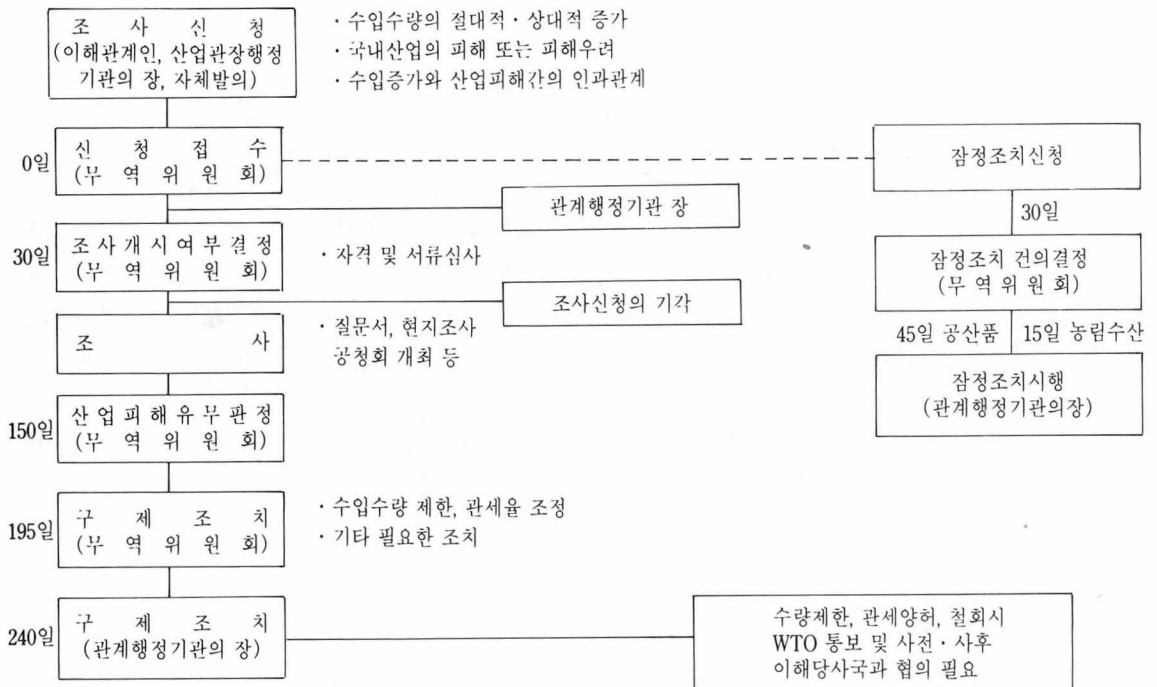
무역위원회가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수입과 피해의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품과 국내물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like or directly competing) 상품이어야 하고 둘째 수입상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 피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야 하고 셋째 수입과 심각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GATT 규정 및 UR협정과 일치되어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이를 국제규범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완료시킨 바 있다.

이와같이, 세이프가드제도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수입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경쟁산업으로 하여금 조정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무역을 확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국제무역장벽이 완화 또는 철폐됨에 따라 상이한 경제체제간의 무역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부터 국내의 특정산업 및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자유무역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구제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조조정 및 규제의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

## 나. 절차도



\* 복잡한 경우 120일 이내 조사기간 연장

## 66

우리기업이 개방화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WTO시대를 맞이하여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능동적 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수입으로 인한 외국의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산업 구제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99

#### 다. 사례(고추가공제품)

1989년 5월 18일 상공부(현 통상산업부) 무역조사관 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한호선)가 국내 고추 재배농가를 대표하여 대외무역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한 고추가공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조사건을 접수하였다.

신청자는 고추가공제품 수입물량 및 금액이 1987년도 및 1988년도에 급증하여(1988년의 경우 전년 대비 물량 188%, 금액 82% 증가) 고추재배농가의 판매가격 하락 등 전체 고추산업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중단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역위원회는 1989년 5월 23일 농림수산부와 보건사회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고 동 신청서에 대한 자체검토를 통해 동 조사신청의 기각사유를 발견치 못함에 따라 과연 국산 고추가 수입품과 동종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인지, 국내산업의 발전이 저해 또는 저해우려의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직접 수입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고추가공제품에 대하여 조사번호 대무 32-89-1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조사개시 결정내용을 1989년 6월 19일자 관보에 게재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정식조사절차를 수행하고자 1989년 6

월 17일 조사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1989년 6월 24일 질문지를 송부하여 1989년 8월 12일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을 분석·완료하였다.

산업피해조사단은 1989년 6월 17일 상공부, 농림수산부 및 보건사회부관계관,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공인회계사 등 8인으로 구성되어 수차에 걸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1989년 9월 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조사단은 질문지, 현지조사, 공청회기록 등을 참고하여 분야별 임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함과 아울러 구제조치부분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1989년 9월 20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1989년 9월 30일 산업피해구제 결정에 아울러 국내산업에 대한 구제조치를 의결하였다.

무역위원회의 구제조치 건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인 상공부장관은 1989년 10월 10일 고추장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92. 12. 31까지 3년간 실시하였고 '92년 무역위원회 연례검토에서 다시 구제조치기간을 3년간 연장키로 의결하여 구제조치가 '9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에 있다. 또한 농림수산부장관은 고추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고추재배면적 및 재배농가의 적정규모 조정과 품종개량 및 재배 기술향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